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38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국세채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상습 채납자의 채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채납자가 채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주요내용

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채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함.

나. 금지금 및 외화의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융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 제외 근거 마련(안 제1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채납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채납자가 채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채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청장도 검사에게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강제징수비(압류)”를 “강제징수비[압류”로, “채권”을 “채권(이하 이 호에서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1항제4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은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압류 관련 우선채권의 설정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자금 흐름 및 소득 상태,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유지하여 국세 채권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서 제106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압류의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6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

금(金地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융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같은 법 제8

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납자가 채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채납자의 감치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재판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u>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u> 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u>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채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	4. ----- <u>강제징수비[압류-----</u> ----- ----- -- <u>채권(이하 이 호에서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u> -- <u>포함한다]</u> ----- ----- . 다만,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신설>	가.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u>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채납액을 기준으로</u>

<신 설>

5.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6조(공매)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
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
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 2. (생 략)

할 경우 남은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압류 관련 우선채권의 설
정 시기와 목적, 채납자의
자금 흐름 및 소득 상태,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경
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채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채납액을 납부하지 아
니하고 압류 관련 우선채
권을 유지하여 국세 채권
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경우로서 제106조
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압류의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제115조(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채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채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국세청장은 채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융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5조(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 ① -----

--. 다만, 채납자가 채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30억원

구 분 \ 연 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 제외 근거 마련(\$115)	6	6	6	6	6	30 6
	소 계(B)	6	6	6	6	6	30 6
총 비용(A-B)		△6	△6	△6	△6	△6	△30 △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15조 (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	국세 채납액의 50% 이상 납부 시 감치 면제됨에 따라 감치 면제 받고자 하는 채납자의 채납액 납부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게 됨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15조 (고액·상습채납자의 감치)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6.12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①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 제외 근거 마련 (§115)

○ 세수증 : 30억원(연평균 6억원)

- 97억원* × 50%** × 6%*** × 2(상·하반기) × 5(5개년) ≒ 30억원

* '26년 상반기 국세채납정리위원회 감치 결정: 채납액 97억원

** 감치 신청 면제 채납액 대비 최근 2년간 납부 비율: 50%

*** 감치 신청자 채납액 자진 납부 인원 비율: 6%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팀장)	국장
이희범	이예솔	서준익	김병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예솔	044-215-4152	bambisol@korea.kr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해당없음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6년 7~8월	기획예산처	세입예산안에 반영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팀장)	국장
이희범	이예솔	서준익	김병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예솔	044-215-4152	bambisol@korea.kr